

2018년도 기업수요 기반 맞춤형 기술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

서울산업진흥원은 다양한 전문교육기관들과 폭넓은 제휴 및 협력을 통해 신직업 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8년 3월13일
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

1. 사업 개요

☐ 목 적

-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대규모 전문기술인재 채용수요가 존재하는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단기간 집중교육을 통해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고, 해당 분야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성된 인재들을 일자리로 연결

☐ 사업 내용

-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을 양성하고, 양성된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연결
 - 수요기반 실무교육 : 전문교육기관과 기업의 컨소시엄으로 기업의 채용수요를 반영한 3개월 내외 집중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운영
 - 기술인력 적시 공급 : 수료생과 채용기업간 지속적으로 매칭 및 적시 연결

☐ 사업 개요

- 분 야 : 4차 산업혁명 관련 유망 신산업 및 신기술 융합분야

교 육 분 야	내 용
① 융합 소프트웨어 개발	인공지능, 로봇틱스, 사물인터넷, 무인자동차, 드론, 스마트 팩토리, 가상/증강현실, 클라우드 등 다양한 4차 산업 분야에 필요한 융합형 소프트웨어의 기획, 분석, 설계, 구현 및 테스트 등과 관련된 분야
②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	'정보화 사회의 원유(Oil)'에 비유되는 빅데이터의 수집, 저장, 처리, 분석 또는 마케팅 등 이를 활용한 분야
③ 정보보안시스템 운영	사물인터넷 등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확산 결과, 취약해질 수 있는 각종 정보보안 시스템의 설계, 관리, 운영 등과 관련된 분야

- 신청 자격 : ‘전문교육기관 + 채용(예정)기업’ 형태의 컨소시엄
 - 전문교육기관 : 서울시에 소재한(사업자 등록) 역량 있는 교육기관
 - 채용(예정)기업 : 스타트업, 중소기업, 협회 등 본 사업을 통해 배출된 인력에 대해 채용할 의향이 있는 서울 소재 기업
 - 책 임 자 : 교육을 총괄 운영하는 자로 운영기관의 장 또는 운영기관에 소속된 직원

※ 컨소시엄은 사업신청시 목표교육인원 수의 50%에 해당하는 채용에 대한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함(참여필수조건), 사업운영 중 교육인원 수에 해당하는 채용에 대한 채용의향서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함(관련 계획 신청서에 기재)

○ 사업 기간 : 2018. 5. 1 ~ 10. 31(6개월)

○ 사업 규모 : 총 14.4억원

※ 1개 기관당 1개 과정 운영 원칙. 예산 및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총 지원기관 수 결정

○ 사업 목표 : 총 500명 내외 인력양성

○ 시간당 지원금 단가(1인 기준) : 14,000원

【지원금 지급 방식】

구 분	내 용
1차 지원금	- 인건비, 운영비로서 교육과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- 1차 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 1) 지원금액의 20% : 협약체결 이후 2주 이내 지급 (목표 교육인원 기준) 2) 지원금액의 50% : 교육시작 이후 2주 이내 지급 (실제 교육인원 기준) 3) 최종 지원 잔액 : 교육종료 이후 2주 이내 지급 (실제 수료인원 기준) ※ 1차 지원금 총액은 실제 수료생 기준으로 지급 및 정산 - 사업종료 후 SBA 지정 공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 및 감사 시행
2차 지원금	- 성과달성에 기여한 운영인력에 대한 성과장려비 - 수료인원, 취창업 인원에 따라 사업종료 후 차등지급 - 수료성과 인당 100,000원, 취창업성과 인당 200,000원 ※ 35명 기준. 최대 1,050만원

※ 목표한 교육 인원대비 실제 교육인원과 수료인원이 미달된 경우, 교육운영기관은 미달사유와 함께 사업비 계상내역을 수정하여 제출하고, SBA는 적정여부를 검토 후 1차 지원금 순차적 지급

※ 1차 지원금의 최종잔액 지급시, 기 지급한 금액(목표교육, 실제교육인원 기준으로 지급된 금액)이 실제 수료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1차 지원금 총액을 초과한 경우 정산을 통해 환수

지원금 신청 및 지급 예시

- 교 육 인 원 : 목표 교육인원 30명, 실제 교육인원 25명
- 교 육 시 간 : 총 300시간
- 교 육 성 과 : 실제 수료인원 23명, 취창업인원 15명
- ⇒ 1차 지원금 총액 : 96,600,000원 / 2차 지원금 총액 : 5,000,000원

구 분	산 출 근 거	지 급 액
1차 지원금	(1) 협약체결 이후 2주 이내 지급 (20%), 목표 교육인원 기준 $14,000\text{원} \times 30\text{명} \times 300\text{시간} \times 20\% = 25,200,000\text{원}$ (2) 교육시작 이후 2주 이내 지급 (50%), 실제 교육인원 기준 $14,000\text{원} \times 25\text{명} \times 300\text{시간} \times 50\% = 52,500,000\text{원}$ (3) 교육종료 이후 2주 이내 지급 (지원잔액), 실제 수료인원 기준 $(14,000\text{원} \times 23\text{명} \times 300\text{시간}) - 77,700,000\text{원} = 18,900,000\text{원}$	96,600천원
2차 지원금	• 수료성과 $100,000\text{원} \times 20\text{명} = 2,000,000\text{원}$ • 취창업성과 $200,000\text{원} \times 15\text{명} = 3,000,000\text{원}$	5,000천원
합 계		101,600천원

○ 성과 지표 : (주지표) 수료인원, 취업인원 / (부지표) 교육만족도 등 운영기관 자체제안 지표

- 취업률(취업인원/수료인원) 70% 이상 목표제안시 가점(5점) 부여
-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성과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, 사업비 정산
- 제안한 목표 취업률 달성 실패시 차년도 사업 참여제한
- 최종평가에서 '우수'로 평가를 받은 과정은 차년도 사업지원시 가점 부여

※ 취업은 수료생이 채용(예정)기업 등에 고용되어 고용보험 등에 가입된 상태로, 고용 보험가입확인서 등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

2. 교육운영 개요

교육대상	해당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※ 역량, 나이, 학력, 경력, 자격 등 특별히 요구되는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함 ※ 교육생 모집시 해당 교육과정의 수준에 대해 정확하게 명시하여 사전 안내하도록 함
교육시간	300시간 내외 (2~3개월 집중교육)
교육인원	과정당 20~35명
교육내용	-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한 현장맞춤형 커리큘럼으로 구성 - 기업현장 전문가를 강사로 구성하여 실무중심 과정으로 기획 - 직업윤리와 의사소통능력(커뮤니케이션 스킬) 등 기본소양강화 필수 <단계별 커리큘럼 예시 : 소프트웨어 테스터 과정> 인력수요조사 채용의향파악, 교육과정기획 선정 ↓ 필수과정 기본소양 → 기초과정 테스트 개요/ 설계 이론 ↓ 인력매칭 취업(창업) ← 특화과정 기업프로젝트 실무 실습 ← 심화과정 테스트 자동화 실습, ISTQB
수 강 료	100,000원 내외 ※ 수강료는 교육생의 수업참여도 등을 높이기 위함. 수료시 전액 환급
교육장소	운영기관 보유(임차) 공간 외에 필요시 SBA신직업에듀센터 교육공간 활용 가능

※ 운영기관은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교육과정을 기획 및 운영해야함

3. 추진 내용

☐ 일자리 성과 제고를 위한 수요기반형 맞춤형교육과정 운영

- 교육운영기관과 수료생의 취업처인 채용기업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
- 기업현장 전문가를 강사, 멘토로 하며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한 실무중심과정으로 기획
 - ※ 기업 수요조사 등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신청서에 구체적으로 기재

※ SBA는 교육생의 강소기업(하이서울기업 1,000개사) 등 취업연계를 위한 지원 예정

☐ 운영기관간 제휴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교육과정 홍보를 위한 행사 공동 추진

- 운영기관 담당자간 매달 1회 정기모임(운영협의회)을 통해 교육운영 성과공유 및 네트워크
- 신직업 인식확산과 직업탐색의 기회제공을 위한 ‘신직업 위크’ 공동추진(예정)
 - ① 상반기 : 각 과정별 교육생 모집 설명회 + 오픈클래스(강좌 맛보기)
 - ② 하반기 : SBA 육성 신직업 소개 및 신직업 인재 사례발표 등

※ ‘신직업인재’의 정의

- 1) 투철한 직업윤리를 보유하고, 2) 신기술과 신산업을 이해하며, 3) 신사업과 신성장을 주도할 능력을 갖추고 서울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인재

☐ SBA는 교육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사업관리 및 점검

- 교육현장 참관하여 교육생의 민원 및 만족도 등을 파악하고 교육운영에 즉시 반영
- 교육과정 진행상황, 시설현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모니터링

☐ 우수한 교육기관 선정을 위하여 선정심사시 기관평가 강화

- 교육기관의 역량(사업 수행실적)과 재무건전성 파악을 위한(재무제표 등) 서류 필수 제출
- 선정평가위원회에 회계사(1명)을 포함시켜 전문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구성

☐ 교육과정 성과제고를 위한 자부담금 의무납부 및 환급

- 교육과정의 성과제고 및 협력 운영의 취지를 위해 모든 운영기관은 자부담금(5,000천원)을 납부함. 동 자부담금은 사업종료 후 사업성과에 따라 성과장려비 형태로 환급될 수 있음

※ 자부담금은 사업참여를 위한 필수조건임

※ 성과장려비 산정방식에 따라 자부담금은 해당액의 일부 또는 전액, 그 이상의 금액으로 환급될 수 있음

※ 운영기관이 제출한 일자리 성과 증빙자료는 SBA에서 검토 후 성과 인정여부 최종결정

4. 선정 평가

☐ 평가절차 및 방법

- 선정평가는 제안내용에 대한 운영기관의 책임자 발표와 평가위원과의 질의응답으로 진행
- 외부전문가심사(90점), 강소기업선호도 조사결과(10점), 가점(5점)을 합산하여 선정
- 제안내용(추진성과 등)의 사실 확인을 위해 SBA 관계자가 평가 전 사전면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면담결과는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

☐ 선정평가위원 구성

- 산업계,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(회계사 1인 포함)

☐ 주요 평가지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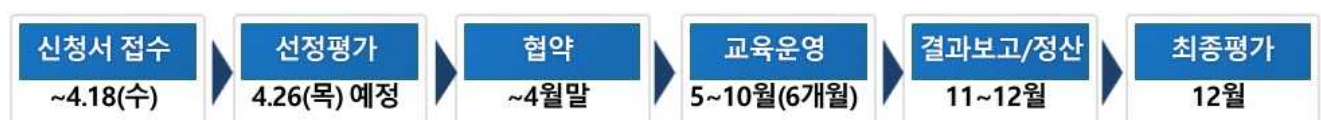
구 분	항 목	세부 지표	배 점
외부전문가 심사	최종목표의 적정성	- 목표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	15
	교육운영 내용의 구체성 및 적절성	- 기업 채용수요 확보의 적절성, 협력관계 - 교육과정 구성·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우수성 - 강사진의 전문성 및 활용 가능성 - 사업비 구성 및 운용계획의 타당성	30
	사업추진 능력의 우수성	- 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(상근인력 규모 등), 특히 협·단체의 경우 회계 투명성, 공정성, 건전성 (외부감사 등) 등 - 사업수행 주체의 추진의지 - 교육공간 및 시설, 장비 등 인프라의 적정성 - 유사사업 수행실적 및 성과	30
	성과활용 및 기대효과	- 수료생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 - 해당 산업분야 관련 기업의 수혜 가능성	15
강소기업(하이서울기업) 대상 교육과정 양성인재 선호도 조사 결과			10
목표 취업률(취업인원/수료인원) 70%이상 제안시 가점			5
합 계			105

※ 주요 평가지표의 배점은 달라질 수 있음

※ 강소기업선호도 조사(10%)는 하이서울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, 접수된 교육과정의 양성인재에 대한 선호도를 실시할 예정

5. 추진 계획

☐ 절차 및 일정



※ 세부적인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□ 신청서 접수

○ 접수기한 : 2018. 4. 18(수) 18:00시까지

○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 후 방문(우편) 접수

※ 접수기한 내에 온라인 신청(SBA 홈페이지 통해 신청)과 오프라인 신청(방문/우편으로 신청서류 제출)을 모두 하여야 최종 접수 완료됨. 우편으로 접수 시 제출기한 소인일자까지 가능

① 온라인 신청 : 접수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업로드

【온라인 신청 방법】

접수 페이지(<https://mybiz.sba.kr/>)방문 ▶ 기업회원(가입 후)로그인 ▶ '사업신청'클릭 ▶ '접수중인 사업'클릭 ▶ 목록에서 '2018년도 기업수요 기반 맞춤형 기술인재 양성 프로그램' 클릭 ▶ 신청하기 클릭▶

하단의 첨부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제출(용량 30MB 제한, zip파일로 업로드) ▶ 하단의 제출 클릭

※ 신청서 파일명은 '맞춤형 기술인재 양성 신청서_기관명'으로 저장

※ 신청서 파일용량이 초과하여 업로드가 안될 시 담당자 메일(bizschool@sba.seoul.kr)로 제출

② 오프라인 신청 : 온라인 신청 후 아래 신청서류 목록 일체를 방문 또는 우편 접수

○ 신청서류 목록

NO.	목 록	부 수	비 고
1	운영기관장 명의의 공문	1부	-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으로 작성
2	운영신청서	8부	- 양면으로 인쇄하여 제본 - 작성분량이 적을 경우는 왼쪽상단에 스테이플러로 철하여 제출
3	운영기관의 유사사업 실적(교육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성과 등) 참고자료	8부	- 자유양식
4	개인정보 조회·수집 및 이용 동의서	1부	- 신청서 內 [첨부1] 양식 사용
5	자부담금 납부 약약서	1부	- 신청서 內 [첨부2] 양식 사용 - 자부담금 납부는 의무사항이므로 모두 제출
6	채용의향서	1부	- 신청서 內 [첨부3] 양식 사용
7	사업자등록증	1부	- 서울소재 확인용
8	법인등기부등본	1부	- 운영기관이 법인인 경우 제출
9	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	각 1부	- 국세 납세 증명서 : 국세청 홈택스→납세 증명서(국세완납증명) 메뉴 통해 발급 가능 - 지방세 납세 증명서 : 민원 24 →지방세 납세증명' 메뉴 통해 발급 가능 ※ 2018.3.18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
10	2017년도 표준 재무제표	1부	- 운영기관의 재무건전성 확인용

- 접 수 처 :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서울산업진흥원 컨벤션센터 3층 신직업교육팀
(강남구 대치동 514 서울산업진흥원 컨벤션센터 3층)
「기업수요 기반 맞춤형 기술인재 양성 프로그램」담당자

□ 문 의

- SBA 신직업교육팀 「기업수요 기반 맞춤형 기술인재 양성 프로그램」 담당자
(Tel) 02-2187-4687, 4691, (E-mail) bizschool@sba.seoul.kr

□ 유의사항

- 본 사업에 최종선정 된 후 사업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서울산업진흥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운영비로 집행함
- 총 예산범위내에서 선정평가위원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원기관 수를 결정하며, 운영기관이 신청한 지원금은 선정 후 조정될 수 있음
- 제출된 신청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관의 부담으로 함
-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을 운영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등 본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부적합하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정이 배제됨
- 접수마감일 현재 운영기관이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신청불가
- 본 사업에 선정된 운영기관과 책임자는 2018년도 신직업교육팀에서 주관하는 교육사업에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
- 접수기한 내에 온라인 접수(SBA 홈페이지)와 오프라인 접수(방문 또는 우편)를 모두 하여야 최종 접수 완료됨

□ 기 타

- 2018년도 SBA 신직업교육팀 ‘사업설명회’ 개최

일 시	2018년 3월 27일 15:00시
장 소	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컨벤션센터 1층 컨벤션홀1
내 용	신직업교육팀 주관 교육사업 안내(동 사업 외 스타트업스쿨 등)

※ 사업설명회의 정확한 일시와 장소가 확정되면 추후 SBA홈페이지(www.sba.seoul.kr)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오니,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
<첨부> 사업비 편성기준

○ 1차 지원금

비목	세 목	편성기준	증빙자료											
인건비	인건비	· 운영기관에 소속(또는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) 교육운영에 전담하여 참여하는 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인건비 (4대 보험료, 퇴직충당금 등 포함) · 1인이 강의와 행정업무 등을 겸임하는 경우 운영비의 내부강사비와 중복지급 불가 · 1차 지원금 총액의 20% 이내로 계상	급여대장, 근로계약서(연봉표시), 임금증빙서류, 참여인력 현황표, 참여자변경 내부문서 (변경사유포함) 원천징수확인서 등											
	강사비	· 강의에 대한 대가로 내·외부 강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운영 기관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 · 1인이 강의와 행정업무 등을 겸임하는 경우 인건비와 중복지급 불가 ※ 강사비 지급기준 : 예시 <table><tr><th>등급</th><th>지급액</th><th>기준(예시)</th></tr><tr><td>A급</td><td>기본료 230,000 초과 120,000</td><td> - 대학(교) 교수 - 컨설턴트(대표 또는 석사 학위소지 이상) - 판·검사, 변호사, 전문의, 변리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 - 감정평가사, 기술사 - 기업·기관 단체의 임원이상 - 예술인, 종교인, 언론인 -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- 기초지방의회의원 -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·예술, 체육, 언론, 종교,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</td></tr><tr><td>B급</td><td>기본료 120,000 초과 100,000</td><td> - 대학(교) 전임강사 - 연구기관의 연구원 - 일반 컨설턴트 - 4.5급 공무원 -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·예술, 체육, 언론, 종교,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</td></tr><tr><td>C급</td><td>기본료 80,000 초과 50,000</td><td> - 6급 이하 공무원 -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</td></tr></table>	등급	지급액	기준(예시)	A급	기본료 230,000 초과 120,000	- 대학(교) 교수 - 컨설턴트(대표 또는 석사 학위소지 이상) - 판·검사, 변호사, 전문의, 변리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 - 감정평가사, 기술사 - 기업·기관 단체의 임원이상 - 예술인, 종교인, 언론인 -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- 기초지방의회의원 -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·예술, 체육, 언론, 종교,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	B급	기본료 120,000 초과 100,000	- 대학(교) 전임강사 - 연구기관의 연구원 - 일반 컨설턴트 - 4.5급 공무원 -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·예술, 체육, 언론, 종교,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	C급	기본료 80,000 초과 50,000	- 6급 이하 공무원 -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
등급	지급액	기준(예시)												
A급	기본료 230,000 초과 120,000	- 대학(교) 교수 - 컨설턴트(대표 또는 석사 학위소지 이상) - 판·검사, 변호사, 전문의, 변리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 - 감정평가사, 기술사 - 기업·기관 단체의 임원이상 - 예술인, 종교인, 언론인 -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- 기초지방의회의원 -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·예술, 체육, 언론, 종교,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												
B급	기본료 120,000 초과 100,000	- 대학(교) 전임강사 - 연구기관의 연구원 - 일반 컨설턴트 - 4.5급 공무원 -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·예술, 체육, 언론, 종교,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												
C급	기본료 80,000 초과 50,000	- 6급 이하 공무원 -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												
비요청	교재비	·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재 구매 및 제작비(인쇄비 등)	견적서,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비 카드영수증, 이체확인증, 거래명세서, 교재사본 등											
	자료비	· 교육과정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 서적, 문헌 등의 자료구입비	견적서,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비 카드영수증, 이체확인증, 거래명세서, 자료사본 등											

비 목	세 목	편성기준	증빙자료
	재료비	-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로서 실습키트, 소프트웨어 등 구매비(실비지급) - 교육과정과 무관한 재료 및 자산은 불인정	견적서,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비카드영수증, 이체확인증, 거래명세서, 구매물품 사진 등
	장비비	교육과정에 필요한 장비 임차비용 (장비구매비, 기보유 장비 감가상각비 등은 불인정)	임대계약서 또는 견적서,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비카드영수증, 이체확인증, 거래명세서, 장비사진 등
	사무 용품비	교육과정에 필요한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	세금계산서 또는 사업비카드영수증, 이체확인증, 거래명세서 등
	현장 실습비	교육 현장실습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으로 차량임차비, 위탁교육비	계약서 또는 견적서, 위탁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, 세금계산서, 이체확인증, 거래명세서 등
	재해 보험료	교육 현장실습 등에 참여하는 교육생의 재해보험료(실비)	보험가입견적서, 이체확인증 등
	교육생 식비	교육과정 운영 시 교육생에게 제공하는 도시락 등으로 1인당 7천원~ 1만원 이내, 다과비는 1인당 1회 5천원 이내로 함 (교육생에게 직접 현금지급 불가)	사업비카드영수증, 대상 교육생 명단 등
	기념품비	교육생 제공의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등으로 1인당 2만원 이내로 함	견적서,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비카드영수증, 이체확인증, 거래명세서, 구매물품 사진, 수령자 명단 등
	홍보비	- 교육생 모집 등 교육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, 온오프라인 매체 광고비용 - 홍보물 제작 시 서울산업진흥원 BI 반드시 삽입	계약서 또는 견적서, 세금계산서, 사업비카드영수증, 이체확인증, 거래명세서, 홍보 결과물 등
	여비	- 책임자와 실무자가(본 사업에 투입된 인력으로 사업계획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인력) 채용기업 확보, 교육생 현장실습 지원을 위한 출장시 사용되는 교통비 및 식비로 내부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- 내부지급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 규정 준용하여 별도로 마련 - 내부강사가 강의를 위해서 출장을 가는 경우는 강사비에서 산정	운영기관 여비 지급 기준, 영수증, 출장신청서, 출장복명서, 이체확인증 등
	회의비	- 교육과정 운영 및 채용(예정)기업 실무진과의 회의에 따른 식비 - 회의비는 인당 식비 2만원, 다과비 5천원 이내로 계상	회의록, 사업비카드영수증 등

비 목	세 목	편성기준	증빙자료
	이행보증 보험증권 발행수수료	·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행 수수료	이행보증보험증권 사본
	회계정산 수수료	· 약 730천원(사업종료 후 SBA 지정 위탁회계법인 통해 정산)	
	기타비용	· 이외의 사업비 편성과 관련된 사항은 SBA담당자와 사전에 상의 후 집행	sba와 협의한 서류 제출
간 접 비	간접비	· 교육운영과 관련된 간접 비용 · 1차 지원금 총액의 5% 이내로 계상	간접비 산정내역

○ 2차 지원금

비 목	지급 기준
성과장려비	· 정량적인 성과에 따라 운영기관에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 · 산정방식 : (수료인원 × 100천원) + (취창업인원 × 200천원), 최대 인원 35명

- ※ 1차 지원금(인건비, 운영비) 에 한하여 상기표의 '사업비 편성기준'에 따라 사업비 산출
- ※ 1차 지원금 총액은 실제 수료생 기준으로 지급 및 정산(환수)
- ※ 2차 지원금(성과장려비)은 정량적 성과에 따라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라 자동 지급되므로 별도로 산출할 필요 없음
- ※ 인건비는 1차 지원금 총액의 20% 이내, 간접비는 1차 지원금 총액의 5% 이내로 계상. 증액 불가
- ※ 2차 지원금(성과장려비)은 최종 제출한 취창업 성과에 따라 확정하여 지급
 - 취창업 성과는 증빙자료로 판단하며, 취업의 경우 고용보험가입확인서(또는 그에 준하는 확인서) 등, 창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등의 서류로 제출
 - 최종 성과 제출기한은 12월 중으로 추후 별도 안내 예정
- ※ 1차 지원금은 SBA 위탁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